

[별표 4]

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포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	추천기관	추천대상자
호	소호						
0207		제0105호의 가금(家禽)류의 육과 식용 설육(胛肉)(신선한 것,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		
0207	1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 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				
0207	12	*절단하지 않은 육 (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	0			
0207	14	절단육과 설육(胛肉)(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		
		*1. 절단육 2. 설육(胛肉) *나. 기타		0	30,000 톤	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 (사)한국외식 산업협회 (사)한국육가 공협회	실수요업체
1602		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·설육(胛肉)·피·곤충		0			
1602	3	가금류(家禽類)로 만든 것(제0105호의					

1602	32	것으로 한정한다) *닭[갈루스 도메스 티쿠스 (<i>Gallus</i> <i>domesticus</i>)종의 것 으로 한정한다]으로 만든 것	삼계탕 이외 의 것	0			
------	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	--	--

비고: 품명란에 “*” 표시된 품목은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
중관리품목을 말한다.